

#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18

## 1. 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인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3.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4호

## 4. 노인학대의 특성

- 복합성: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하게 얽혀온 가족관계 갈등의 극단적인 형태임.
- 반복성: 일회적인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을 보임.
- 지속성: 외부개입이 어렵고 쉽게 해결되지 않아 그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짐.
- 은폐성: 가족이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갈등이므로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음.

## 5. 노인학대 행위별 유형

유형	정의	대표적 행위의 예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주먹으로 때린다. -밀어서 넘어뜨린다.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웃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허락 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방임 (자기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낯선 장소에 버린다.

## 6. 노인학대 신고

-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에게 상담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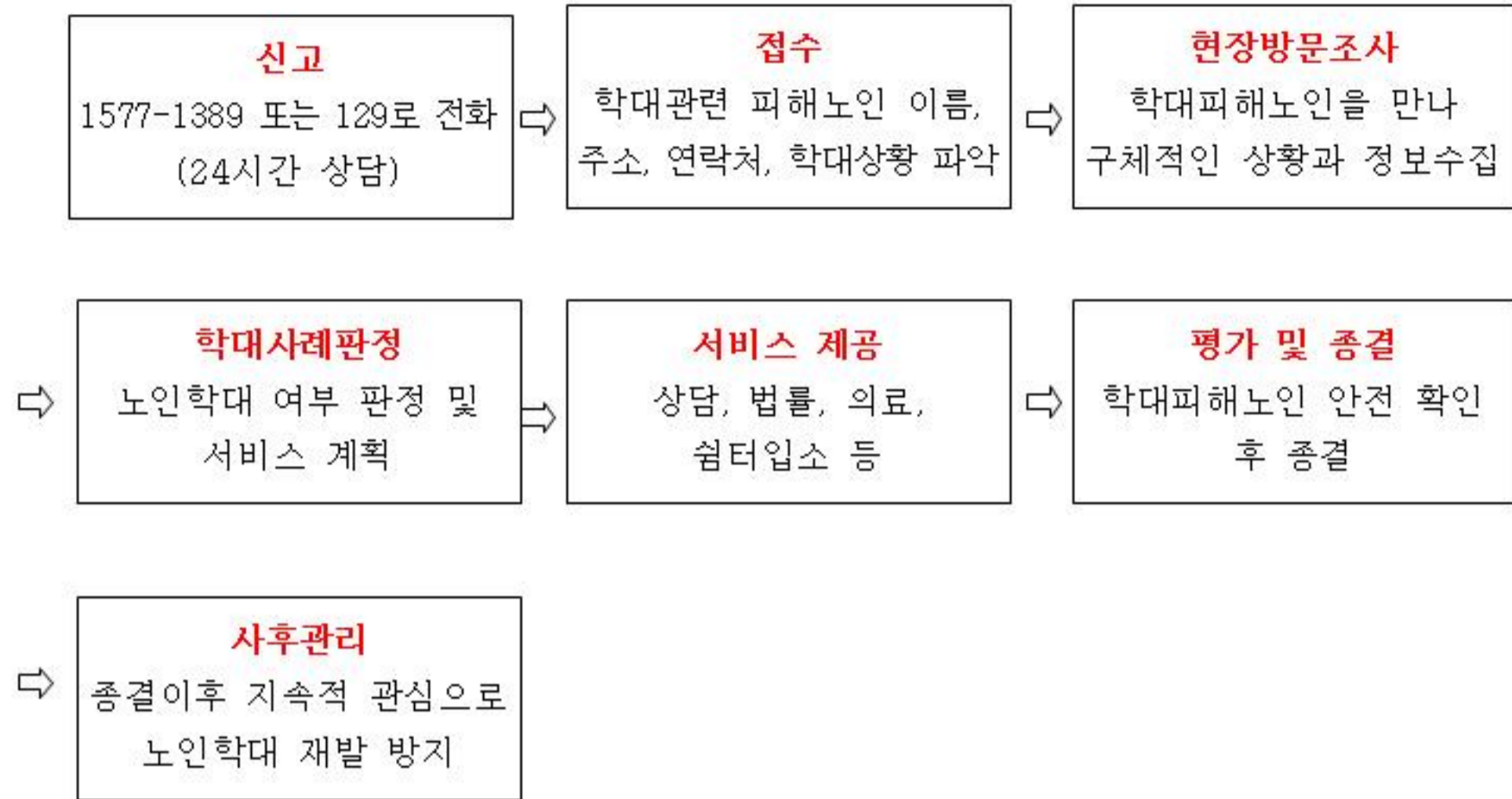
**1577- 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및 110, 또는 129**

- 신고인의 비밀보장(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3항)

## 7. 노인학대 사례 도움 과정



## 8.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처벌규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 1)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에 의거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에 의거 노인에 대한 폭행, 성폭행 및 성희롱, 유기, 방임행위를 하였을 경우,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노인복지법 제55조의4에 의거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에 의거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9. 노인학대 예방 행동지침

1. 어떤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없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 할 수 있는 한 유지한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진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한다.
7.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한다.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9. 자녀와의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
10.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배포 2015 교육자료 참고)

“행복한 노후의 만족스런 삶을 위한 최선의 돌봄은 존중과 사랑입니다.”